

『구미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』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: 2013년 11월 21일

나. 발 의 자 : 정하영, 강승수, 권기만, 김성현, 김익수, 박세진,
박주연, 손홍섭, 윤영철, 황경환(10인)

다. 회부일자 : 2013년 11월 22일

라. 상정일자 : 2013년 12월 5일

제183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정하영 의원

나. 제안이유

-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
법치사회 및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(안 제3조)
-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 지정 등 주요사항을 심의하는
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설치·운영(안 제4조 ~ 안 제6조)
- 공익신고자 보호환경조성사업 및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에
대한 우선구매 등 특례에 관한 사항(안 제7조 ~ 안 제10조)
- 공익신고센터를 통한 공익신고 접수처리, 공익신고자에 대한
보호 및 교육지원 등을 통한 민간참여 확대(안 제12조 ~ 안 제16조)

라. 참고사항

-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 제3조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박 성 애

○ 본 조례안은

-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치사회 및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

○ 주요 내용으로는

- 먼저, 안 제3조는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, 안 제4조 ~ 안 제6조는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 지정 등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설치·운영을, 안 제7조 ~ 안 제10조는 공익신고자 보호환경조성 사업 및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에 대한 우선구매 등 특례에 관한 사항을, 안 제12조 ~ 안 제16조는 공익신고센터를 통한 공익신고 접수처리,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및 교육지원 등을 통한 민간참여 확대 등 18개 조문과 부칙으로 되어 있음

○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

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의 제정목적에 따라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과 공익신고자 보호우수기업 등을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치사회 및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조성을 위해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,

조례를 통해 실질적인 공익제보자 보호 및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조례의 제정은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며,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어 별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